

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4월 7일

발의자 : 임희도 의원

1. 제안 이유

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여 불완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,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 관한 입법공백 해소(안 제1조~제2조, 제9조)

나. 사무위탁 시 위탁계획 수립 의무화(안 제6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4. 10. ~ 4. 17.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2항 및 제3항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”을 “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·민간의”로, “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”을 “그 효율적·통일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”을 ““위탁”이란”으로, “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”를 “수탁기관에”로, “책임 하에 행사하도록”을 “책임으로 수행하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시의 사무를 위탁받은”을 “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·공공단체 및 민간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(중전의 제3호) 및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민간위탁하기”를 각각 “위탁하기”로 한다.

2. “위탁사무”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민간위탁”을 “위탁”으로 한다.

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 위탁 대상사무 선정

제4조의 제목 “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”을 “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”을 “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4조제2호 중 “능률성”을 “공익성보다 능률성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”를 “(위탁의 적정성 검토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민간위탁”을 “위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민간”을 “수탁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
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7조를 제8조로 하며, 제6조를 제7조로 한다.

제7조의2를 제8조의2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 제1항 본문 중 “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 하고자”를 “사무를 위탁하고자”로, “하남시 시의회”를 “하남시의 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제4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(중전의 제3항) 제2호 중 “민간위탁”을 각각 “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 중 “민간위탁”을 각각 “위탁”으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위탁기간

제6조(위탁계획)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, 필요성, 위탁기간 및 조건
2. 범위, 내용 및 타당성

3. 보조 및 지원예산

4. 추진방법 및 일정

5. 기대효과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.

제8조의2(중전의 제7조의2)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민간위탁사무”를 각각 “위탁사무”로 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8조)의 제목 “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”를 “(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민간위탁적격자”를 “사무위탁적격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“민간위탁”을 각각 “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민간위탁사무”를 “위탁사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”를 “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·기술사·노무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민간위탁사무”를 “위탁사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민간위탁”을 “위탁”으로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0조) 제3항 후단 중 “제8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4항 본문 중 “민간위탁”을 “사무위탁”으로 한다.

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관리 운영

제17조제1항 중 “할 수”를 “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“민간위탁”을 “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재계약·민간위탁”을 “재계약·사무위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,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.

제3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,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·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[1]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]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]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]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5]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6]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7]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8]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9]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10]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11]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12]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13]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14]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

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15]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6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16]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제5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17]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”를 “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19조제5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18]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19]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0]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1]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2]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3]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4]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5]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6]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7]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8]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29]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0]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1]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·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2]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3]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

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4]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5]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6]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7]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8]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39]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0]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1]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2]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3]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4]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6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5]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6]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7]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8]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49]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50]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51]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52]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53]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54]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55]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56]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57]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[58]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하남시 사무위탁 조례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1장 총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----- --- <u>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·민간의</u> ----- ----- <u>그 효율적·통일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</u>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위탁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수탁기관에</u> ----- -----</p>

명리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<신 설>

2. “수탁기관”이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3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5. “위탁사무”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

-----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-----.

2. “위탁사무”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

3. -----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·공공단체 및 민간의 -----.

4. ----- 위탁하기-----

-----.

5. ----- 위탁하기-----

-----.

<삭 제>

제3조(적용범위) ----- 위탁-----

<신 설>

제6조(의회 동의 등)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

하는 사항

제6조(위탁계획)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, 필요성, 위탁기간 및 조건

2. 범위, 내용 및 타당성

3. 보조 및 지원예산

4. 추진방법 및 일정

5. 기대효과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.

제7조(의회 동의 등) ① ----- 사무를 위탁하고자 ----- 하남시

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<신 설>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4. (생략)
5. 민간위탁기간
6. 7. (생략)
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(생략)
10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

의회-----
-----, <단서 삭제>

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----- 위탁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위탁 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5. 위탁기간
6. 7. (현행과 같음)
8. 위탁-----
--
9. (현행과 같음)
10. -- 위탁 -----

한 사항

제7조 (생략)

제7조의2(선정방법 등)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,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
2. 민간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
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

① 수탁기관 선정, 성과평가, 재위탁,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
2. ~ 4. (생략)

제8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

제8조의2(선정방법 등) ① -----

1. 위탁사무-----

2. 위탁사무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

① -----

----- 사무위탁적격자 -----

1. 위탁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에
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
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
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
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
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
자동 해산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
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
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
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
로 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
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
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
람

3.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
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
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4.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
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, 사
회적경제 전문가

5. (생략)

5. ----- 위탁-----

② -----

위탁사무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
·기술사·노무사 -----
--

3. ----- 위탁사무 -----

4. -----
----- 위탁 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⑧ (생략)

제9조 (생략)

제10조(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.

④ (생략)

제11조·제12조 (생략)

제13조(지원)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~

③ (생략)

④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계약해지 후 2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. 단,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<신설>

제17조(운영지원) ① 시장은 수탁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11조(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제9조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·제13조 (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)

<삭제>

제15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사무위탁 -----
-----.

제3장 관리 운영

제17조(운영지원) ① -----

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1조(성과평가) ① 시장은 민간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·민간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.

----- 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성과평가) ① ---- 위탁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재계약·사무위탁 -----

-----.